

[통합 Ezbaro] 신한은행 범정부 연구비 전용 계좌 신규 안내

본 안내문을 신한은행 영업점에 제출 바랍니다.

최종 갱신일 : '19. 11. 4

연구비 계좌 신규 절차

통장개설 필요서류 준비

상세 준비서류 뒷장 참조

신한은행 방문

본 안내장&필요서류 지참

연구비 전용계좌 개설

기업뱅킹 가입 선택

가입대상 / 유의사항

- ※ **가입 대상** : [통합Ezbaro] 에 등록된 신규 연구 과제를 협약한 기업
 - ※ 본 안내문 & 회사명이 기재된 과제 선정 문서와 기업용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
 - ☞ 정부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안내장에 게시된 '기본 준비서류' 외 '추가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영업점 방문 전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연구비 전용계좌 개설**: "신한 연구 & 사업비 우대 통장" 개설 시, 우대 서비스 제공
 - ☞ 통합Ezbaro 또는 RCMS 과제용 "신한 연구 & 사업비 우대 통장" 이 있는 경우 재사용 가능 (단, 복수 과제 병행 시 입/출금 확인이 불편할 수 있음), *예전 전문기관 전용통장은 사용 불가
 - ※ **연구비 전용카드**는 다음 안내에 따라 **신한카드사로 온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신한은행에서 발급 불가)
 - ☞ www.gaia.go.kr 에서 "통합연구지원" ▶ "통합Ezbaro 참여 카드사" ▶ "신한카드" 선택
- ☎ 신한카드사 연구비 카드 전용 콜센터 [1566-0369]

영업점 직원 업무처리용

연구비 전용카드 영업점 창구 발급불가. 일반 법인카드 발급 금지(★)

- ① 본 안내문을 지참한 연구수행 기업의 정부 연구/사업비 수령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필수 징구 서류는 해당 기관/재단의 "연구 과제 선정 결과 통보 공문"으로 갈음 가능함 (단,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는 징구)
- ② **신한 연구 & 사업비 우대통장** (보통예금 or 기업자유예금) 신규
 - ☞ 본 통장으로 신규해야 고객 수수료 우대됨 (우대 조건 하단 참조)
- ③ 기업 인터넷뱅킹 신규 (고객 필요 시 가입), Firm Banking은 필요 없음

● 우대 서비스 (세부 서비스 내용은 업무 기준 참고)

- ①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단, 납부자 타행 자동이체 및 대량이체 수수료는 제외)
- ② 당행 CD/ATM을 이용한 본 통장의 마감 후 인출 수수료 면제
 - ☞ 우대 조건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익월 16일부터 1개월 간)
- ① 연구비 전용카드의 신한은행 결제 실적 or
- ② 인터넷 뱅킹 급여 이체 화면을 이용한 직원 급여 이체 or
- ③ 유동성 예금의 최근 1개월 평잔 월 4백만원 이상

[영업점 직원 문의]

기관고객부 공공자금팀

☎ 5 - 5581, 5569, 3116 (내선)

No.155 [대포통장 근절] 금융거래 목적증빙 업무 강화

☞ 주요 공지

☞ 대포통장/보이스피싱 근절



신한카드 연구비 전용 콜센터

1566-0369



범정부 연구비 통합 Ezbaro 콜센터

1833-2785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시 필요 서류 안내(Ⅰ)

 아래 기본서류 외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방문하실 영업점에 유선으로 사전 문의바랍니다.

[2018. 5. 23 기준]

구분		법인	임의단체
사업자번호 (중간번호)		•81,86,87,88,84,85 •82(법인인감 신고업체의 경우)	•80,89 •82(법인인감 미신고업체의 경우)
통장 신규	본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용도장(법인인감 사용가능)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납세)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용도장
	대리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통장사용도장(법인인감 사용가능)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납세)번호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통장사용도장(인감도장 사용가능)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인감도장
인터넷 뱅킹	본인 신청시	•통장신규 '본인 신청시'의 서류 및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	•통장신규 '본인 신청시'와 동일
	대리인 신청시	•통장신규 '대리인 신청시'와 동일	•통장신규 '대리인 신청시'와 동일

구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사업자
사업자번호 (중간번호)		•83	•01 - 79 •90 - 99
통장 신규	본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용도장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용도장
	대리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대리인 신분증과 통장사용도장 •위임관계 서류 다음 중 하나 ① 관인대장(사본) + 위임장(관인날인) ② 계좌개설요청공문 + 관인대장 ③ 대표자의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용도장(인감도장 사용가능)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인감도장
인터넷 뱅킹	본인 신청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 본인 신분증 •관인대장사본 + बैं킹 서비스 신청공문 •통장 및 통장인감 ※ 인터넷 बैं킹 신청서 뒷면에 관인날인	•통장 신규 '본인 신청시'와 동일
	대리인 신청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 대리인신분증 •관인대장사본 + 위임장(관인날인) •기업 인터넷뱅킹 신규요청 공문 •통장 및 통장인감 ※ 인터넷 बैं킹 신청서 뒷면에 관인날인	•대리인은 신청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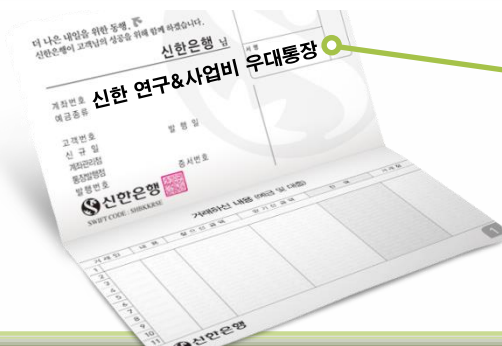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시 필요 서류 안내(II)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2016년부터 시행중인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제출서류(예시)

[2016.08.31기준]

단체구분	징구 서류			
	신원확인 및 검증 서류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설립목적 확인서류
	대표자 내접	대리인 내접		
주식회사	- 법인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금융실명제에 따른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
유한회사			- 출자자 명부, 정관 등	
합자회사			- 사원 명부, 정관 등	
합명회사			- 출자자 명부, 사원 명부, 정관 등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사단법인				
재단법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단체(어린이집, 유치원, 아파트관리 사무소 등)	- 단체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번호 보유시)	- 단체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금융실명제에 따른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위임장 및 대표자인감증명서 등)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번호 보유시)	- 정관, 규약 등 - 고객이 작성한 고객거래확인서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서면(공문, 실제 소유자 확인서 등)	- 정관, 비영리민간 단체등록증, 회칙, (관리)규약, 소속 증명서(종교단체), 인허가증 등 - 공공기관 웹사이트 게시된 설립목적 정보 출력·첨부 가능
외국기업	- 투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법인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투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공증을 받은 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주주명부(State of Information) 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실제소유자의 성명(영문포함), 생년월일, 지분을, 국적정보가 명시된 공문	-
개인의 대리인	- 금융실명제와 동일 - 가족이 아닌 경우 : 본인과 대리인 실명증표, 위임장, 인감증명서 - 가족인 경우 : 대리인 실명증표, 가족관계증명서			

신규 사업단 '사업비 입금용 전용계좌' 정상 개설 확인 방법 안내



예금종류 확인

↓
신한 연구&사업비
우대통장